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080
----------	------

제안년월일: 2020년 12월 17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901호)과 송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904호) 및 김호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972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충전시설의 충전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신설함.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 대상을 축소함.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라. 서울특별시 소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마. 충전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충전(充電)시설”을 “충전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으로 하고, 제6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0. “충전료”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시장의 책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
-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이의 충전인프라 관련 통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제1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의 제목 “(충전시설의 종류)”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충전료 징수)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및 충전 시설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u>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u>”이란 <u>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u></p> <p>4. ~ 5. (생 략)</p> <p>6. “<u>이동형충전기</u>”란 <u>벽면이나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사용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충전시설 ---- <u>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u>-----.</p> <p>4. ~ 5.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7. “<u>수소전기자동차</u>”란 <u>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u></p> <p>8. “<u>전기자동차 충전시설</u>”이란 <u>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9. “<u>수소연료공급시설</u>”이란 <u>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u></p> <p>10. “<u>충전료</u>”란 <u>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3조(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u></p> <p>④ <u>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⑤ <u>시장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이의 충전인프라 관련 통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u></p> <p>⑥ <u>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u></p>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 규정을 따른다.

<신설>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 ④ (생략)

<신설>

제7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

의 종류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형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으로 이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① -----
-----.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충전시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제1항-----

-----.

제8조(충전료 징수)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및 충전시설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 ② (생략)

제9조(시행규칙) (생략)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